충남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7. 12. 14.(목) 14:00
- 장 소: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회의실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관: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인권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 일　시: 2017. 12. 14.(목) 14:00~16:00
- ■ 장　소: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회의실
-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 주　관: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인권위원회
- ■ 주　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듣는 충남인권의 현실과 과제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충청남도인권위원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김 연 의원
			< 토 론 회 > ※좌장: 김 연 의원	
14:10	14:30	20′	**주 제 발 표** ‣ 김형완 소장 /인권정책연구소 ☞ **지역사회 인권실현과 발전방안 모색**	
14:30	15:40	70′	**지 정 토 론** ‣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금산가족통합지원센터 ‣ 황영란 센터장/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다빈 학생/천안중앙고등학교 ‣ 이대희 지회장/금속노조 갑을오토텍 ‣ 유옥정 회장/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장명진 공동대표/충남인권행동 ‣ 이진숙 부위원장/충청남도인권위원회	토론자 전체 (각 10분)
15:40	15:55	15′	종 합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전원
15:55	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목 차

■ 주제발표

☞ **지역사회 인권실현과 발전방안 모색** ····· 3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 지정토론

☞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 현실** ····· 15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 **충남 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 ····· 19
황영란 센터장(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충남 학생청소년 인권의 현실** ····· 23
김다빈 학생(천안중앙고등학교)

☞ **인간이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다** ····· 25
(갑을오토텍 사례를 통해 본 노동기본권의 현실)
이대희 지회장(금속노조 갑을오토텍)

☞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안** ····· 37
유옥정 회장(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운동에 대하여** ····· 41
장명진 공동대표(충남인권행동)

☞ **인권위원으로서의 문제의식과 제안** ····· 43
이진숙 부위원장(충청남도인권회원회)

주제발표

지역사회 인권실현과 발전방안 모색

김 형 완 소장

(인권정책연구소)

지역사회 인권실현과 발전방안 모색

김 형 완 소장
(인권정책연구소)

1. ‘인권에 기반한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

이른바 인권도시 담론은 ‘인권에 기반한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 ‘인권친화적 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인권에 기반한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로 대별된다. 인권에 기반한 도시는 오늘날 국제인권사회에서 규범화 된 가치들에 기반하여 도시행정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9대 인권관련 협약이 정하고 있는 인권기준들을 도시행정에 기본적인 가치로 규정하여 적용, 펼쳐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도시의 내용은 권리주체의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권리실현의 책무를 지고 있는 행정청의 ‘의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역시 도시‘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인권규범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반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은 도시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도시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된다기보다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나아가 소유권 등 그 자격에 비례하여 도시서비스의 향유정도가 달라진다. 그 중심에는 가장 크게는 소유권이라는 자격, 당해 구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적 근거, 국적과 같은 시민권의 소지여부, 심지어 전과나, 장애, 출신국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가족관계 및 결혼여부 등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도시구성원으로서의 도시공간의 향유수준과 행정서비스의 수혜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강남사람들은 강북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공원과 녹지, 생활 인프라를 누린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격제한을 없애고 도시공간을 전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용과 향유의 권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권도시 담론 보다 매우 급진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갖는다.

어찌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란, 근대 시민혁명 이래 여전히 인류의 숙제로 남겨진 과제를 풀지 못하는 한 ‘보편적 인권의 미완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오늘날 인권은 과연 보편적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사실 그리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 시민권은 오늘 국적과 소유권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시민권이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 로크의 주장대로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비로소 존엄성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

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구성원 모두에게, 그 자격과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 주체성을 부여하고 도시자원의 향유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물론 인권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의 시민권은 시민혁명을 통해 천부인권론이 갖는 선험론적, 이원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늘날 인권담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향유자의 실질적 제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장본인인 국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인권이 보장되는 자기모순 등 시민권이 갖는 원천적 한계와 다반사로 붕괴되는 법치주의라는 현실의 문제와 얽혀 극복, 보완, 심화, 확장되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라는 언명이 함의하듯, 중앙과 지역이 수직적 위계질서로 고착되어 시민권의 한계를 우회하여 돌파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 속에 있다. 똑 같은 국민주권의 발현이더라도 중앙에 비해 지역은 2등, 3등 규범으로 여겨지고 우리 헌법은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2.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급진성

유럽에서의 68실험은 인권의 보편성을 되찾기 위한 우회로를 모색했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제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인권이 시민권의 울타리를 뚫고 나가는 급진적 상상을 한 것이다. 즉 인권이 시민권인 한, 권리주체는 국가에 의해 인증되고, 자격이 부여된 국민으로 제한된다.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 국가가 그에 대한 책무를 (형식적으로)인정한다. 국가에 소속된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자격이 주어지고 '국민'에 한하여 기본권 수임주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국가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이 딜레마라니! 그러나 도시에서의 권리란 공간을 전유한 거주민 모두에게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민권으로 수렴된 인권발전사의 결정적 병목점을 우회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계급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이다.

오늘날 도시는 무엇인가. 거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다. 그런데 그 거주민들은 예외 없이 이주민들이다. 주요하게는 자의든 타의든 국가에 의해 동원되거나 시장의 요구에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공간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도시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이미 소외를 경험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집합공간이라는 뜻이다. 국민국가는 발전전략, 또는 성장논리를 앞세워 전통적인 사회를 후진 것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이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는 도시로, 시민은 국민으로, 사회는 국가로 각각 대체됐다. 도시는 한편으로 국가와 시장의 이해를

반영한 산물이면서, 동시에 소외와 배제의 공간이 되었다. 파리코뮨과 68의 경험, 광주항쟁시기 해방구(바리케이트로 상징되는 도시거점 투쟁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도시의 현재적 특성을 그 자체로서 인권의 프레임 속으로 포섭한 것이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다. 시민권에 주저앉은 인권의 급진성을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되찾은 것이다. 마침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가 중심의 경계와 구획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 맥락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와 같이 개별적 단위국가를 넘어 지역연합으로 재구성되든가, 비대화 된 중앙집중형 국가가 분권화, 자치화, 지역화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그 공통점은 국가를 통하여,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관계가 이제는 도시와 도시가, 마을과 마을이 직결되는 다층적 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글로컬리즘(glocalism,globalism+localism)이라고 부른다. 글로컬리즘은 중앙집중형 국가권력을 지역분권의 주민자치공동체로 대체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3. 인권실현을 위한 도시의 지위와 역할

국가인권기구는 전형적인 가버넌스기구로서 광범위한 시민적 인권역량에 근거하여 존립, 역동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기구로서 존재하는 한(=호적이 국가인 한) 중앙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기구로 존재하는 이상 인권적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권력작용에 의존하는 경향성(vs.연성 권력기구, 준사법기구)이 나타난다. 그러나 권력작용은 본질적으로 인권적 권리구제의 방법이 아니다. 인권의 실현은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충족'이다. 이것을 우리는 '탄압패러다임의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지역에서 인권레짐을 구현하는 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한다(이원론적인 진영론이나 정의론의 극복,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난다"). 이는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주민생활에 근거한 '밑바닥 인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에서의 인권체제가 '주민복리'의 틀 안에서만 협소하게 해석될 경우 소위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개념과 직결되기 마련이고, 자칫 인권의 핵심특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생활 속의 인권'이란, 인권을 오로지 사적 층위로만 잡아넣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쟁투를 인권의제로 둔갑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본디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권이슈가 사적 공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이를 어떻게 문제화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선 지역에서 주체의 자력화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이 필요하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도덕성에 기반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역인권체제의 비전이 설

정되어야 한다. 국민국가는 사회적 연대와는 조화로울 수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민을 '국민'이라는 집단으로 재구성하여 동원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시장은 경쟁과 요율의 증진을 위해 시민을 '개인'으로 해체하여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파괴하므로, 지역에서 인권중심의 가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국민과 개인으로 각각 왜곡된 '시민'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곧 사회(공동체)의 복원이다. 중앙차원에서 안정화되기 어려운(접근성, 실효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인권의 공백을 메우는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역진불가한 인권의 요새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권침해의 장본인이기도 한 국가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맡기는 근본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완화하는 우회로이기도 하다. 지역인권체제의 핵심은 주민참여구조(기획, 입안, 시행, 점검, 평가 등 지자체 업무의 전 과정에 걸친)에 기반하여, 지역에서의 인권가버넌스 창출을 통해 도시와 도시가, 마을과 마을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 되는 비전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4. 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4중책무

지방정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본질적 사명을 새삼 재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행정이란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국가작용 중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작용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이고, 헌법은 주권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그 국가작용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는 국가작용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정체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역시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며, 이는 지방행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주민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4중의 책무를 진다. 이는 크게 존중책무, 보호책무, 증진책무, 충족책무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네 가지의 범주는 추상적 수준에서 개념적으로만 분리될 뿐 실제로는 하나의 몸통을 이룬다. 그 이유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이라는 3대 특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행정청의 인권실현의 의지와 실천계획을 밝히는 것이므로 권리목록보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중심으로 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책무성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지방정부의 인권존중(Respect for Human Rights)책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에 관한 보호책무를 말한다. 생명과 안전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해의 방지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토대이자, 동시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곧 안전의 확보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다. 근대 이전의 시기까지는 생명의 안전과 의식주의 해결은 신의 뜻과 각자의 운명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의식주의 해결은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부여했다. '신'과 '운명'의 자리를 '국가'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인간의 기본적 생명유지를 위한 의식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운영의 원리가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주권자는 헌법이 규정한 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작용의 하나인 행정은 다른 어느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명유지와 안전이라는 삶의 기본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생명의 유지와 영위 자체가 위협 받는 처지에 놓인 주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기본적 삶 자체가 위협 받는 절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책과제이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범죄피해자 포함)에 대한 방책을 포함하여, 취약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 식량, 에너지, 물, 의료, 강제철거(행정대집행)금지 등 (인도적)긴급보(구)호조치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자유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 연대의 강화라는 인권실현이 가능해진다. 존중책무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존엄과 안전(=인간안보)'이다. 존중은 언뜻 각 개인의 품성과 도덕률에 의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대(박애)에 의해 구현된다.

4-2.지방정부의 인권보호(Protection for Human Rights)책무

생명의 영위와 안전확보(=존중)라는 토대 위에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그 인권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첫 단계로 '자유의 보호'책무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이 본디 사회적 존재이고, 그 사회성은 생각하고 말하고, 소통하면서 구현되므로 결사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알권리의 충족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적 권리'와 그러한 시민적 자유를 정치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권리'로 구분된다. 자유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무는 소위 인권실현을 위한 소극적 책무, 일차적 책무로 간주된다. 자유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공평성과 함께 정의실현의 토대가 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의 반부패투명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요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노조결성 및 신앙과 양심의 자유 보장, 옴부즈만 등 실효적 권리구제시스템의 확충, sns 등을 통한 주민 직접(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상호소통의 활성화 등이 자유의 보호에 해당하는 정책이겠다.

4-3.지방정부의 인권증진(Promotion for Human Rights)책무

자유의 보호만으로는 경쟁과 효율, 성과주의에 의해 불평등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평등실현을 위한 대책이 동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인권실현을 위한 책무에는 자유의 보호와 함께 차별의 해소,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반차별정책의 핵심은 공정성(fairness)의 제고와 함께 공평성(equality)의 확대이다. 적극적 우대조치 등 차별해소를 위한 잠정적 조치, 또는 그 규범의 마련, 출연기관 및 공기업에서의 공정거래 확보 및 생활(최저)임금실시 우대정책 실시, 경력단절해소조치 및 기회의 균등 확보, 어린이, 청소년, 장애, 성소수자, 비정규직,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차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별구조가 격화되면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예컨대 혐오선동이나 혐오범죄가 필연적으로 발호하기 마련이다. 이는 차별구조의 심화는 물론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균열시키는 위협으로 작용한다. 외생적 위협요인에 의해 연대의 기반이 깨져나가는 것을 넘어 공동체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되는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반차별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반차별 정책은 당장 시급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역차별 전략을 취한다. 젠더밸런스를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기도 하며, 장애인고용촉진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이것을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심각한 차별해소를 위한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며 과도적인 조치인 것이다.

4-4.인권의 충족(Fulfill for Human Rights)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자유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은 인권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의 '침해자(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를 결핍(want)에 대한 충족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비록 침해자/가해자라 할지라도 배제와 응징, 심판만으로는 인권실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는 개인의 도덕성, 윤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품성과 인성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인권이 권력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품성과 인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인권침해행위 또는 사고를 둘러싼 서사와 맥락을 포착해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찾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악, 인권침해에는 결핍이 있다.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필수적 요소들이 제대로 결합되지 못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는 결핍의 결과, 또는 현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결핍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존감과 자력화의 기반이 상실된 피해자에게도 나타난다. 결핍은 결국 사회적 연대, 즉 공동체의 협동을 저해한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정책, 인권교육의 확대, 주민일상의

복리증진과 행복의 제고,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삶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도둑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만일 음식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 도둑질 밖에 없다면 혹형(酷刑) 대신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충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는, 마사 누스바움에 의하면 연민(com-passion)이다. 연민은 '동정'이나 '동감'과 달리 상대의 고통을 자기동일화 하는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이 공동체적 연대의 강화를 가져온다. 공동체적 연대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권이념의 3대 구성 가운데 하나인 박애의 다른 표현이며 인간의 인격과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각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자비로움(사랑)을 의미한다. 혐오는 불평등의 심화와 격차의 구조화에 따른 사회적 존재의 총체적 불안정성의 표출이다. 이는 공동체적 연대의 기반을 파괴한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격돌이 마치 위기탈출의 비상구로 간주된다. 무관심에서 촉발된 증오와 경멸이 종국에는 무자비(無慈悲)를 낳는다. 결국 불평등의 해소는 물론 그를 넘어 결핍에 대한 충족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존중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권이 곧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는 인권을 그저 개인의 품성론, 인성론의 함정에 갇히게 하는 위험이 있다. 개인의 인성도 품성도 그것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요되는 구조 안에서 존중과 배려는 무력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지방정부의 사중책무는 다시 말하거니와 개념상으로만 그 범주가 구분될 뿐 실제로는 상당부분 중첩되거나 동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한 범주설정은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이 범주들은 현실에서 존중->보호->증진->충족의 단계로 선순환하며 나선형으로 발전하도록 기획될 때 인권실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지역인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헌법개정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인권실현의 책무는, 적어도 시민권의 틀 안에서만 보더라도 분명한 헌법적 요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7년 개헌시기에 지방화, 분권화를 모토로 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민과 실천이 부재하여 결국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매우 제한되고 그나마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마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도시의 실현 또는 지방정부의 인권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향은 자치 분권화의 정신을

헌법조문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관해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주권재민의 원리가 차별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분립으로 확대해서 점차 지방자치 강화형-광역지방정부 중심형-연방제 정부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큰 방향은 그렇게 정하되, 당장 시급한 것은 법률과 조례 규범의 서열화가 대의민주주의, 주권재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민주권의 발현체라고 볼 때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하위규범으로서 수직적 위계 속에 자리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인민주권의 발현에 영역은 있을지언정 위아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광역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그 층위에서 수평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앙집중형 국민국가를 분권적 주민자치공동체로 방향전환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117조에 "지자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지자체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하고 있다. 지방화 분권화의 방향 속에서 국가는 지자체의 사무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관하여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기본법으로 정하고 국가와 광역시도는 경합적인 입법권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세 對 지방세의 비율은 80:20으로써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의존도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예속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재정분권의 확립이 어려워져 지방자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자주성과 책임성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 지방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향후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6. 마무리-도시 및 지역에서의 인권레짐,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오늘날 인권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의 시민권은 다중적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로는 시민권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자유로운 시민(bourgeois, citoyen)은 모든 인간을 포괄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국가의 경계에 의해 구획된, 심지어 국가의 인증이 있어야만 존엄성보장이 가능한 체제로 인해 비시민, 또는 비국민에 대한 배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시민권의 이면이 바로 구획과 배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권적 자유의 일방적 강조는 결과적으로 평등과 공동체적 박애를 저해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시민권조차 현실에선 매우 위태롭기 그지없게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은 인권보장을 위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 그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게 하려면 인권이 평소에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시민권은 시민에 의한 권력통제, 즉 법치주의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에선 수시로 민주공화국의 기저를 뒤흔드는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이 벌어진다. 중앙집중의 국가과잉의 관성은 국가의 사명이 '사회보호'가 아닌, '사회지배'로 굴절되게 한다. 결국 오늘의 시민권은 자유로운 시민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보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한편, 동시에 권력분립과 자치의 강화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시민권은 위에서 언급한 도시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의 울타리를 '전유권'으로 돌파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여야 한다. 양극화와 차별구조의 격화에 따라 구조화 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사실상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며, 신분제의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시민권의 공고화만으로는 자칫 불평등의 구조화, 경쟁주의와 능력주의의 절대화를 고착시키고 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반한 기존의 시민권'을 '도시권에 기반한 전유권'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도시(지역)생활공간을 점유한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존엄성보장을! 기본소득이나, 각종 복지정책, 또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사실 시민권의 혁신적 재구성 없이는 그 동력의 근거지를 확보할 수 없다. 중앙과 등등한 위상과 역할을 갖는 지역정부의 출현, 즉 광역은 더 넓히고, 기초는 더 좁히는 행정체계의 개편은 단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수준을 넘어서 '시민권 너머'의 비전을 시사한다. 이주민,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노동자, 노인 등 사회적 취약집단은 이제까지 시민권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정책의 특별한 배려와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영세민취로사업이나 최저생계비지원, 선별적 복지 등이 대표

적인 사례인데, 이 같은 정책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기껏해야 존중과 배려로써,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나아가 근대 이후 확립되어온 권리주체와 책무실현이라는 사회계약의 근저를 왜곡시킨다. **인권(특히 사회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the highest attainable goal)'의 '권리'의 실현이 '정당한 요구'이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그것도 국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설정한 '재정상태의 허락 범위'라는 기준 안에서 권리보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또는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노력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연방제를 통해 광역은 더 넓혀 나라 안의 나라를 만들고, 기초는 더 좁혀 거주민들의 자치공동체를 지향할 때, 그리고 지역 또는 도시가 갖는 공간적, 구성적 특성을 감안하여 앙리 르페브르가 주창한 전유권을 도입함으로써 시민권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지정토론

☞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 현실**

홍수아 베트남통번역사(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 **충남 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

황영란 센터장(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충남 학생청소년 인권의 현실**

김다빈 학생(천안중앙고등학교)

☞ **인간이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다.**
(갑을오토텍 사례를 통해 본 노동기본권의 현실)

이대희 지회장(금속노조 갑을오토텍)

☞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안**

유옥정 회장(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운동에 대하여**

장명진 공동대표(충남인권행동)

☞ **인권위원으로서의 문제의식과 제안**

이진숙 부위원장(충청남도인권위원회)

결혼이주 여성의 인권 현실

홍 수 아 베트남통번역사
(금산군가족통합지원센터)

저는 2016년 7월 20일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연 의원님과 인권위원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현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어떤 조건에 구애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합니다. 참 어렵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디까지가 차별과 편견을 말하는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통번역업무를 일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운 입장들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이런 것인가 생각하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인권이란 이야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일이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 권리라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이름만 쓸 수 있으면 되고, 살림만 할 수 있으면 되고, 18살이 되면 시집가면 되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지 14년 되었는데 살면서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인권위원 활동을 하면서 인권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제 자녀와 같은 또래의 일반 자녀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어서 그 어린이집에 저의 자녀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원장선생님이 거절을 하게 되어 그말을 듣자 저는 너무 속상해서 면담요청을 하여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신청도 못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까요?"라는 말과 함께 여러 가정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장님이 허락을 받아내어 자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언어소통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경우 앞장서서 통역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쯤 학교에서 다문화자녀대상으로 인터넷접수로 프로그램신청을 하면 자전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기쁨은 잠시 '니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니가 자전거를 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 라는 말을 들어 우리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런 상황을 항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온 환경과 아빠와의 결혼을 하게 된 이유 등 우리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엄마가 외국인이란걸 당당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까지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우리아이들이 다른 일반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양보하고 먼저 배려해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담임 선생님들과의 소통에서 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좁힐 수 있었는데, 그나마 전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결혼이민여성보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잘 풀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다보니 한국어가 서툴고 농사일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대화방법 등을 잘 모르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어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습득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시선 때문에 시댁식구들, 주위동네사람들, 학교 친구들에게 막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2의 고향,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하게되는데 그들의 어려움과 절심함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이 떨어질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요. 시아버지가 결핵을 앓고 있는 가정인데 결핵의 병 특성상 감염되는 병이라서 시어머니, 남편의 가족을 제외하고 간호를 목적으로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여성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8년이 되었는데 고향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결핵에 걸려 죽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늦게 알고 보니 집도 센터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센터 한 번을 오지도 않고 가족들이 외부와 차단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권이란 것을 멀리서 찾을게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서로 돕고 살기위해서는 서로 나누고 배려해주는 맘이 먼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그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

황 영 란 센터장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어가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5.10.30. 전부개정]가 제정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소수자 영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차별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소수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커졌다.

현재 충남 장애인수은 126,400명(2016.12월말 현재)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순수 등록 장애인 수만 계수된 것이기에 실제 장애인은 200,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국가별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안 밖이라는 통념이 보편화 되고 있음).

사실, 장애인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수자 인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양한 소수자 중에서도 장애분야는 특수집단의 인권이라 할 수 있어서 장애를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접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장애분야 인권은 한 국가, 한 시대의 인권을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권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렇지만 누구나 겪는 것은 아닌 특수한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온전히 타인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분야 인권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아직도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장애분야 인권은 문재인정부에 들어 걸음이 다소 빨라질듯 싶다. 그와 발맞추어 충남의 장애인 인권 현황을 짚어 보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1. 충남 장애인 인권 현황

충남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 된 근거로는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5.12.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9.20.제정]가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2014년 12월에 최종 보고한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방안 토론회" "2017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맞춤형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설치 확대,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장애인 학대 발생 건수 제로화 등이다. 그리고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서 제시한

1) 전반적 사회 기반-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의 제한, 잘 연계되지 않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족한 인식, 미흡한 장애인 인권교육

2) 실질적 기본권 보장- 주거권, 불충분한 교육권, 낮은 소득, 제한적인 문화예술체육 여가활동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자립생활지원 확대, 시설 내 인권보호 및 시설인권피해자 보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금 미지급 등

확대 또는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치중돼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아직 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인식개선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일부 행정·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 인권 활동가의 절대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점자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가져본다.

2. 충남 장애인 인권 과제

「충청남도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 기준마련 연구」(2015.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에 따르면 인권과 복지는 엄연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지정책에 인권적 측면이 강화될 수는 있어도 인권이 복지의 종속 범주로 배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 즉 개인의 손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장애를 언급하며 환경과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는 개인의 장애를 국가와 사회가 복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인권적 접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일정 부분 장애인복지가 향상되면 인권도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일테면 거주시설의 복지는 인권의 부분과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비례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시설 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거주인의 인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욕구가 재가 장애인을 비롯해 시설장애인들에게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전국적 상황이기에 충청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장애인 인권의 과제는

첫째, 체험홈 확대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이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는 탈시설 정착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최초 5,000,000원에서 2017년 현재는 20,000,000원, 광명시의 경우 10,00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0원이다. 또한 거주시설에 거주하다 지역사회 참여 준비를 하기 위한 체험홈도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시에 1곳만 운영되고 있다. 거주시설 내 설치된 체험홈은 그보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지만 같은 법인, 혹은 시설 내 설치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험홈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전반적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개선이다. 「충남 장애인 접근권 증진방안 연구」(2017. 충남연구원 성태규)에 따르면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 설치해야 되고 저상버스도 총 시내버스 50%를 설치해야 하지만 충청남도의 시·군은 의무 설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운행은 물론 운행범위도 시·군 지자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복지와 차별화된 인권정책 발굴과 장애인권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복지와 인식개선, 인권을 혼재해서 사용하며 실제로 정책의 구별도 모호하다. 하지만 그 것을 먼저 행정해서 구분해주고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탁 및 지원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요원하다.

네 번째는 충청남도인권센터,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권익옹호기관 등이 1년 시간 동안 줄줄이 설치되었지만 역량 있는 장애분야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장애분야는 특수 분야로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부분과 경험으로 얻어 지는 간극이 수 없이 발생하는데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없이 어떻게 충청남도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를 다룰지 궁금하다. 이러한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세 기관은 각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전문가 자문기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충청남도는 이들 기관들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외 활동보조지원 확대, 장애인권센터설치 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불현듯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 앞에 섰을 때 장애감수성이 충분히 훈련 된 기관에서 나서준다면 그래도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은 지금보다는 덜 척박할 것 같다.

충남 학생청소년 인권의 현실

김 다 빈 학생
(천안중앙고등학교)

충남은 조용하다

최근에 각 지역에서 sns나 대자보 등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공론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조용합니다. 충남 내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크게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고 애초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충남이 조용한 이유는 인권 침해 사항이 묻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남 학생인권 실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충남청소년인권 더하기에서 진행한 충남지역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법으로 금지한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비율이 58.4%, 머리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충남이 단순히 조용하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서 계속 곪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불이익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데 있어 학교의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었다 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광주, 전북은 학생인권전담기구가 따로 있어 이 기구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남에는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육청도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고 실제로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충남의 학생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거나 혼자서 화만 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분노가 학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인권의 '인'자도 꺼내지 말라

앞에서 말했듯이 충남 학생 청소년 인권 현실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은 당연히 교육청이지만 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무관심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인권조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례만 봐도 충남에서는 인권의 '인'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온갖 흑색선전과 혐오발언으로 청소년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교육행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일 한번 터지고 나서야 대책 세우고 대응하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지난 10월과 11월에 충남의 학생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나왔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충남만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학생인권으로 충남을 시끄럽게 만들 시간이 왔습니다.

인간이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다
(갑을오토텍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기본권의 현실)

이 대 희 지회장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1.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노동기본권의 침해

1) 신종노조파괴를 기획한 갑을자본의 목적

○ 민주노조 파괴와 무노조 경영

- 갑을그룹의 기업 인수 직후 2010년부터 노동조합 관련 대응방안 마련. 핵심은 파업권의 무력화와 친화력을 내세워 노동조합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것.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완전히 파괴하여 무노조 경영을 하던지, 그것이 안 될 경우 친 사측 노동조합으로 만들겠다는 것

○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통한 이윤극대화

-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연 수익 127억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 후 물량 외주화, 사원아파트 매각, 인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겠다는 계획. 이는 Q-P 시나리오와 그 부속문건들에서 모두 나와져 있는 내용임

○ 자유로운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기반 확보

- 현행 단체협약 상 비정규직 채용이 어려우며 노동조합이 있는 한 외주화는 사실상 노사합의 없이 불가능.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 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 핵심 노조 간부(활동가) 추출과 노동 3권 무력화를 통한 강력한 현장통제

- 핵심 노조 간부나 현장 활동가들을 추출하여 조합원들과 분리시키고, 그 과정에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 다는 것. 강력한 현장통제력을 발휘해 나간다는 목표

2)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로 인해 침해된 노동기본권

□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공작: 노동조합을 용납하지 않는 자본**

갑을자본은 2015년 전직경찰, 특전사 출신의 노조파괴용병들을 고용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복수노조 설립 기획과 지원을 진행함을 통해 갑을

오토텍지회를 파괴하려고 함. 이는 자본이 자신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임

○ 신규채용(위장채용)을 통한 反(반)노동조합 세력형성

- 특전사, 전직 경찰 위장채용을 통해 反(반)노동조합 세력형성과 이에 동조하는 관리직 및 기능직 규합하여 노조파괴를 위한 동력 형성

○ 테러·린치 등의 폭력 교사와 실행

- 지회 활동 위축, 핵심 간부 및 활동가 퇴출을 목적으로 한 린치와 테러 등 폭력교사(주요 간부 명단 10명, 지회 사무실 등에 대한 테러 기획). 현장 게시물 철거,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 폭력 등을 교사하고 실행함

○ 복수노조 설립 기획과 지원

- 갑을자본이 기업노조 설립 주도, 지원. 노조파괴용병(특전사, 전직경찰)에게 OT명목의 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별도의 노조파괴 수당 지급. 2노조 사무실 지급, 전임자 인정, 총회 및 회의시간 인정, 별도의 활동자금 지원 등

□ **불법대체인력과 불법대체생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박탈**

불법대체인력과 불법대체생산으로 인해 파업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갑을오토텍지회의 파업권이 무력화 되었음. 이로 인해 단체행동권에 기반하는 갑을오토텍지회의 단체교섭권 역시 무력화됨. 이는 갑을자본이 장기간의 교섭거부 및 1년에 가까운 불법직장폐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었음. 결국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이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공작으로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된 것임

○ 불법대체생산 및 불법대체인력의 채용과 생산

- 신종노조파괴 관련 합의로 노조파괴용병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자 관리직 채용을 명목으로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 관리직으로 들어온 이들 거의 전부가 현장 생산 업무에 투입
- 현대자동차의 대체생산 지시 시점(2016년 7월 18일)에 이미 갑을오토텍 경쟁사를 포함한 협력사 20여 곳에서 대체생산 체계 가동. 갑을오토텍은 별도의 외부 물류창고를 확보하여 납품 체계 갖춤

□ **단체협약 해지, 교섭 거부, 불법직장폐쇄: 1년 넘은 직장폐쇄로 인한 생존권 박탈**

갑을자본은 불법대체인력과 불법대체생산으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 뒤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교섭을 거부하며, 불법직장폐쇄를 통해 갑

을오토텍 노동자들을 고사시키고자 함. 특히 1년 가깝게 진행된 불법직장폐쇄로 인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이는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옴. 결국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함

○ 불법직장폐쇄의 장기 유지

- 직장폐쇄는 2012년부터 기획되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시점을 수정해 옴. 2014년 10월 13일이던 것을 노조파괴용병 채용 시점인 2014년 12월 이후로 변경. 2015년 3월 노조파괴용병의 실체가 드러나고 기업노조를 설립하자 그 당시로 직장폐쇄 시도했으나 대체생산 체계 등이 완전하지 않아 시점 연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박효상의 선고 시점(2016년 7월 15일 경-현대차의 대체생산 지시 시점과 일치)에 직장폐쇄를 단행하려 했으나 박효상의 법정구속으로 7월 26일로 연기하여 단행
- 11개월간의 직장폐쇄 유지기간 동안 모든 단체교섭 거부, 공권력 투입 요구, 경찰과 합작하여 지회의 불법성 주장, 회사가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요구를 지회가 수용했으나 지속적인 교섭 거부로 일관. 직장폐쇄 장기유지의 목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사작전을 통한 내부와해 유도

○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파기

- 2016년 8월 25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2017년 2월 24일부 효력발생). 단체협약이 해지되어도 규범적 부분은 효력유지, 그럼에도 임금(기복리후생적 금품 포함) 체불 및 복리후생 중단
- 정문 용역경비 일방적 재배치

□ **노동부, 경찰, 검찰의 직무유기와 사측 편들기: 공권력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유린**

갑을자본의 불법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노동부, 경찰, 검찰 등의 공권력은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통해 갑을자본의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였음.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할 불법행위들에 대한 보호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박탈당하는 것임. 이는 심각한 문제임

○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공작에 공조한 아산경찰서

- 불법대체인력에 의한 대체생산 중단 촉구를 위한 전 조합원 철야농성에 대해 초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7월 26일 직장폐쇄 직전인 22일, 24일 양일에 걸쳐 지회가 불법이라며 현행범 체포 협박. 회사의 용역경비 대거투입 당일인 8월 01일을 시점으로 지회 확대간부 전원에게 아산경찰서의 출두 요구. 그 외 경찰과의 공조 정황 다수

○ “유성과 갑을은 지청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감독관의 발언

- 최근(2017년 8월 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유성과 갑을 문제는 우리 지청이나 천안검찰 수준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함. 이는 특정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가 관할청이 아닌 윗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일개 지회 수준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법적 대응을 완벽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어딘지 모르는 통제센터에서 결정하면 그만인 상태임. 따라서 특정 사업장에 대해 이렇게 관리하는 관행이나 이유를 밝히는 한편,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수사권은 사실상 없었으며, 담당 검사, 해당 검찰지청이 모든 것을 관장하였음.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조차 무시하며, 갑을자본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함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한다 해도 담당 검사는 계속해서 보강지시를 내리고 있음. 갑을오토텍과 유성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거의 단 한 건도 보강지시를 내리지 않은 건이 없음. 또한 현재까지 2~3차례가 넘는 보강지시가 내려올 경우 그런 건은 대부분 무혐의 내지는 불기소로 결정되고 있는 상태. 반면, 경찰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 기소지시를 내리는 상태

○ 2015년 4월 14일~ 24일 진행된 갑을오토텍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건 축소와 은폐

- 당시 갑을오토텍 부문장 권기대를 통해 Q-P노조파괴 시나리오 전모를 확인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결국 고용노동부가 폭력 유혈사태를 방조한 것임
- 압수수색 내용 중 노무법인 “예지”가 노조파괴문건을 작성하였고, “김&장”이 증거인멸 등에 가담하고 노조파괴에 개입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예지”는 참고인 조사로 종결하였으며, “김&장”은 아예 수사기록(휴대폰 문자, 사용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은폐하였고 수사조차 하지 않음
-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파괴용병으로 하여금 폭력을 교사하는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노간 쌍방폭행으로 정리
-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으나 사전모집 위장채용과 지배개입에 대한 것으로만 내용을 축소했으며,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는 경주 동국실업의 금속노조 설립 관련 갑을오토텍에 사전모집, 위장채용 했던 노조파괴용병들을 투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섭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성공보수를 지급한 범죄를 묵인함

○ 부당노동행위 다발 사업장, 노조파괴 증거,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경비외주화, 대체인력, 대체생산 등의 내용을 모두 인지했으나 회사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노조법에서 금지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생산 및 대체인력 채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아직까지 지연시키고 있음

- 대체생산과 대체인력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수사 무능력,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남
- 검찰은 지속적인 보강 지시로 회사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음. 실제로 불법대체인력과 불법대체생산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 서버를 잠그고 증거를 조작한 증거도 있음
- 노조파괴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를 고용노동부에게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 경영진 및 간부들에 대한 기소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지휘만 내리고 있는 상황

○ 일련의 부당노동행위 증거와 실행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건은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는 상태

-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는 일련의 부당노동행위가 Q-P 노조파괴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대로 실행되었고 관련한 수사도 거의 완료되었으나 고용노동부가 늦장피우고 있는 상태

○ 단체교섭 거부, 불법직장폐쇄의 장기 유지, 불법직장폐쇄 철회 이후 노사합의 위반 및 근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방치

□ **기타**

갑을노동자들이 불법직장폐쇄가 종료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갑을자본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갑을자본은 다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목표했던 인적·물적 구조조정과 외주화·비정규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음

○ 손해배상 청구: 노동조합 확대간부 대상으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약 103억원)

○ 현장탄압: 기초근무질서 지키기를 내세운 현장 순찰 조합원 감시,통제(위반자 징계협박)

3) 결론: 노동기본권의 박탈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

갑을오토텍 불법직장폐쇄가 종료되기 얼마 전인 2017년 4월 18일,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인 김종중 열사가 자결하였음. 갑을자본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격과 공권력의

편들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임. 이는 노동기본권의 박탈이 한 인간의 생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는 사례임. 노동기본권은 헌법상의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생존 자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임

2. 노동기본권이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

1)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에서의 구속수사 원칙 필요

-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의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송치 및 기소에 대한 시기적 제한이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심각성 및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의 확립이 필요 함

2) 검사에게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처럼 독점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특수사경인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 이전이 필요

- 검찰의 노조파괴 사건을 비롯한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는 시기적으로 기한이 없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을 송치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재수사지휘하고 있음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의 상향을 위한 입법 필요

- 현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법정형은 2년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법정형인 3년 이하와 3천만원 이하보다 낮고, 이를 근거로 실무에서는 구속수사의 어려움의 근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경우 검사가 경한 형을 구형하거나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할 빌미를 주고 있음, 따라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헌법상 노동3권 실현을 실제적으로 가능케 해야 함

3.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1) 노동기본권 침해 : 충남도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 갑을오토텍을 포함한 충남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시민이고, 충남도민임. 기업과 사업주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것은 곧 지역의 시민과 도민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도민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 갑을오토텍 사측의 신종노조파괴공작에 직면하여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경우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진행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활동들은 이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한계는 있지만, 심각하게 침해받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가짐

○ 아산시

-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및 반영, 사업주에게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 건강권을 위한 지원(육체적, 정신적), 생활고에 대한 제도권내에서 지원

○ 아산시의회

- 사업주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의정활동, 용역깡패들의 폭력 도발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

2) 충남지역의 노동인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제

- 위의 사례의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유의미한 사례임. 이는 갑을오토텍의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 목표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당해 노동자들의 고충처리, 건강권과 민생 지원 모색**

- 현재 충남지역에는 갑을오토텍 외에도 유성기업, 파인텍, 현대제철비정규직, 서산톨게이트, 조은·삼양교통 등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과 사업주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7년간 투쟁하고 있는 유성기업을 비롯하여 위의 사업장 대부분이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맞서 1년 넘는 장기간의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해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통 및 생존권의 박탈을 겪고 있는 상태임
- 위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해당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충남도 차원의 모색이 필요함

□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단방안 모색**

- 지자체가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인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 충남지역에는 갑을오토텍 박효상, 유성기업의 유시영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구속처벌을 받은 사례가 소수 존재하지만, 이는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한참 이후에 진행된 것임. 이는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난 후 뒤늦게 진행된 것으로 큰 한계를 지님.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진행되기 이전 또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자체의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구제행위가 필요함.
- 갑을오토텍의 사례에서 나타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와 활동은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중단을 압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음.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이 넘는 불법파견업체들이 확인된 바 있으며,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노동인권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적어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임

□ 국가기관(노동부, 경찰, 검찰)의 친자본·반노동 수사 견제

- 충남지역에서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기관(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와 처벌은 항상 미진함을 가져왔음.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편파적인 수사와 결정들이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동시에 노동부에서 1년, 검찰에서 3년 등 기업과 사업주의 명백한 불법행위에도 국가기관의 늦장수사와 직무유기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당해 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상황임
- 지자체 및 지자체의원의 경우 적어도 충남지역에서 국가기관이 기업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또한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주체일 수 있어야 함

□ 충남지역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활동 확대

- 충남지역의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활동 자체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일정정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적·물적 자원의 투여가 충분치 않음

- 충남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결국 충남도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임.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노조할 권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 현재 노동조합의 설립이 늘어가는 추세임. 이는 촛불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이후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의 흐름은 이후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인권향상의 주요한 고리가 될 것임
-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 설립상담이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여전히 존재함.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기본권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노조가입률 10%도 안 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함. 동시에 노조할 권리는 단순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함
- 갑을오토텍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과 사업주는 이윤을 위해 헌법상의 권리조차 무시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처벌과 멈춤이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기본권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박근혜 정권이 퇴진되었고,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화두와는 정반대로 노동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은 굴뚝으로, 광고탑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음. 노동기본권에 전면적 보장과 이를 침해하는 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없다면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보장은 성취될 수 없음

[첨부자료]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공작의 경과

□ 2010년 3월 9일 <갑을오토텍 장단기 노사전략 과제 수립>

- 2011년까지 친화력 형성을 통한 노동조합 이탈 유도와 파업권 무력화, 2012년 노사관계 컨설팅 실행

□ 2012년 8월 <1차 직장폐쇄 시도했으나 실패>

- 2012년 만도, SJM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투입 당시 아산경찰서에 직장폐쇄 신고하려 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함

□ 2014년 8월 <주간연속 2교대 노사 합의 - 신규채용 포함>

□ 2014년 9월 1일 <회사정상화 방안 검토>

- 주요협력업체 공감대 형성으로 재고물량 확보 -> 지회 불법행동 유도 -> 직장폐쇄 -> 공권력 투입 -> 기업노조 설립 -> 단협해지 -> 선별복귀

□ 2014년 10월 27일 <3자 협의체 = 노무법인 예지 + 김 & 장 + 갑을>

- 전반적인 노조파괴 전략 구상(신규채용-위장채용 포함)

□ 2014년 11월 노조파괴 Q-P전략시나리오 수립(단계별 노조파괴시나리오 완료)

□ 2015년 1월 5일 <회사의 2015년 중점사업으로 무분규, 친회사 노동조합으로 집행부교체를 선정. 신규채용자를 통한 노조파괴시스템 가동 - 회사 총무팀 이메일>

□ 2015년 3월 <신규채용자-노조파괴용병들의 지회활동 방해 시작. 2노조 설립>

□ 2015년 4월 초 <지회의 민주노총 및 국회 기자회견 - 신종노조파괴 규정>

□ 2015년 4월 10일 특별근로감독 청원이유서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접수

□ 2015년 4월 14일~24일<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및 압수수색>

□ 2015년 4월~6월 초 <노조파괴용병에 의한 폭력·유혈사태 지속>

□ 2015년 6월 17일~23일 <17일 노조파괴용병들의 집단적 폭력과 정문대치 / 23일 노조파괴 용병 채용취소를 포함한 노사합의>

□ 2015년 7월 31일 <회사의 6. 23 노사합의 불이행>

□ 2015년 8월 10일 <재투쟁 돌입 선포 후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2차 합의>

□ 2015년 10월 경 <갑을오토텍 협력사들을 통해 대체생산 준비 정황 포착>

- 회사에 확인요구 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일축

□ 2015년 10월 28일 <비상경영 선포>

□ 2015년 10월 <신규 관리직 대거 채용 시작 : 사실상의 불법대체인력 선발·운영>

□ 2015년 11월 갑을오토텍의 사전모집, 위장채용, 지배개입 등에 대해 검찰 공소

□ 2016년 1월 <노사합의 파기하면서 정문경비 외주화 일방시행 - 지회 파업 유도>

□ 2016년 3월~4월 <갑을오토텍 협력사에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관련 소문>

- 동시에 경쟁사를 포함한 20여개 업체들과 사전 공모하여 대체생산 체계 구축

□ 2016년 7월 대체인력, 대체생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 2016년 7월 8일 <지회, 불법대체인력의 대체생산 중단촉구 전조합원 철야농성 돌입>

□ 2016년 7월 15일 <박표상 전 대표이사 법정 구속 - 2015년 부당노동행위 건>

□ 2016년 7월 말 지회, 재판기록을 통해 노조파괴 전략문건 및 Q-P시나리오 입수

□ 2016년 7월 26일~2017년 6월 20일 <불법직장폐쇄 단행 / 유지>

- 동 기간 일체의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등

□ 2017년 6월 21일 직장폐쇄 철회(전 조합원 현장복귀)

□ 2017년 9월 1일 기초근무질서를 빙자한 현장순찰 조합원 감시.통제(위반자 징계협박)
경영정상화(사원아파트 매각)이유로 조합원 입주신청자 입주 전면거부

□ 2017년 10월 1일 정문 용역경비 일방적 재배치

□ 2017년 10월 23일 노조업무(노조활동)방해(몰수) 및 불이익 위협(징계협박)

□ 2017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실시(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산안법 위반)

□ 2017년 2월~현재까지 임금(기복리후생적 금품 포함)체불 및 복리후생 중단, 거부

□ 현재 회사는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용보장 할 수 없다며, 노조파괴 Q-P시나리오에 따라 3차 노조파괴 재실행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안

유 옥 정 회장
(전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이고, 전 회장을 맡았던 유옥정입니다. 충청남도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노인을 대표하여 노인인권 분야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되어 긴장도 되지만, 우리 사회 노인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되어 무척 감사합니다.

노인인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서 어떻게 해결되면 좋을지를 제안하는 것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주위의 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몇 가지에 대해 주제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대받는 노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한 분은 자식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자식도 만나보았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달에 며칠 정도만 일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며칠만 일하다 보니 생계가 쪼들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화가 그만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맞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믿고 겨우겨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 분을 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소리 없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만, 제대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노모에게 쏟아내는 참담함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독'의 문제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제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도 외롭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하루 자신은 외로움과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하루하루 외로움과 싸우고 있고 만약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자신은 극단적인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고독,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노인들이 고독하지 않게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생활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서는 화투를 치는 것 외에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복지관에 올 수가 없고 외롭게 사십니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되어야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멀거나 버스를 타기도 어려운 분들은 문화 생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삶에도 문화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빈곤의 문제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점심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점심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탈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니, 작은 목소리로 “아침도 안먹었어요, 저녁까지 먹는거에요”하십니다. 복지관에서의 점심 한 끼로 하루 식사가 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가 보호해주는 수급권자 분들은 이런 저런 혜택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어려운 삶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루 한 끼로 비참한 삶을 사는 노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요. 솔직히 복지관에 오는 분들도 나름대로 복장을 봅니다. 너무 허름하게 입고 오면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갔던 어떤 분의 집에는 한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가 하면 수건조차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정한 수급권의 울타리를 넓혀야 하고, 자식이 있지만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인권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연령차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파트 전단지를 돌리던 분들이 제가 지나가자 ‘노인한테 전단지를 뭐하러 주냐, 주는 것도 아깝다’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충남에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약 40%의 노인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23%의 노인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노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37%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되어

복지관을 이용하고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움직이기도 어려워 요양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도 많은데, 시설에서 함부로 대우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 인권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여기 모인 분들이 함께 힘써서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도민인권선 제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운동에 대하여

장 명 진 공동대표

(충남인권행동)

인권위원으로서의 문제의식과 제안

이 진 숙 부위원장
(충청남도인권위원회)

1. 충남 인권행정 현황

(도민인권지킴이단 교육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의 인권행정(추진배경)

<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
- 도민인권 보장 : 헌법정신에 근거한 충남도 책임·의무

▪ 충남 인권행정 : 도민의 행복과 인권보장을 위해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 제도, 규범을 인권의 가치에 따라 수립하고 집행
-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도정의 주인이 되는 지역공동체
- 20세기 발전주의식(효율성, 생산성) 사고 극복 → 새로운 미래 가치 추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행정 규범

2-2.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 경 과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구성(105명, 2014. 5월) → 선포(2014.10.13)
▪ 충남도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범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내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도민 참여

□ 구성과 내용 : 전문과 6장 21조
▪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 인간답게 살 권리 : 주민생활 기본선, 주거, 교육, 건강 문화
▪ 안전하게 살 권리 : 안전, 환경, 이동 및 접근권
▪ 일과 권리 : 노동, 농어민
▪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 어린이·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그 외 소수자
▪ 인권선언의 이행 : 이행체계 마련

충남의 인권행정(추진배경)

< 그동안 걸어온 길 >

- 2012. 5월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2013. 5월 : 제1기 도민인권 증진위원회 구성
- 2014. 10월 :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
- 2014. 12월 :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15~`19)
- 2015. 1월 : 인권전담 부서 설치
- 2015. 9월 : 제1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
- 2015. 12월 : 인권도정 선포
- 2016. 2월 : 도-시·군 인권증진 업무협약
- 2016. 3월 : 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
- 2016. 7월 :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
- 2016. 12월 : 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운영
- 2017. 9월 : 한국지방정부 최초, UN인권이사회 참석(사례 발표)

인권행정 규범

2-3.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1차) 수립

□ 충청남도의 인권정책의 청사진 : 2014년 12월 수립/ 4대 목표 15개 전략

비전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목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제도 정비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인권협력체계 구축
추진전략	실질적 기본권 보장(7개분야) -노인, -아동 ·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농업인 -어업인	전담부서 신설 인권센터 설립	제도적기반구축 인권교육 강화 인권문화 확산	도 내부적 연계망 구축 다양한(외부) 네트워크 형성

※ 인권실천과제 추진(실국별) : 56개

* 기획조정 3	* 재난안전 3	* 미래성장 1	* 경제통상 2	* 자치행정 13
* 문화체육 6	* 농 정 2	* 복지보건 4	* 기후환경 4	* 국토교통 6
* 해양수산 5	* 소방본부 2	* 공 보1	* 여성가족 4	

인권행정 실행 내용

3-1. 인권 전담조직 설치

□ **인권증진팀 : 2015. 1월 4명(사무관 1, 주무관 3)**

- 역할 : 인권규범(인권조례, 인권선언, 정책기본계획) 수행

※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정책 극대화

□ **인권센터 : 2016. 12월 3명(센터장 1, 인권보호관 2)**

- 역할 : 인권교육(모니터링)과 인권상담·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지역의 인권역량 강화 활동 등

※ 광역 :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전북/ 기초 : 서울 성북구, 수원, 광명

14

인권행정 실행 내용

3-2.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위원회(20명) : 3년간 활동(1기 `13.5~`16.5/ 2기 `16.7~`19.7)**

- 구성 : 여성, 장애인, 노동, 청소년, 이주민 등 분야별 활동 및 전문가
- 활동 : 인권행정 방향 결정(인권증진시책 등), 타 지역 인권위원회 협력

※ 위원회 : (1기) 21회/ 연 7회, (2기) 11회

□ **인권지킴이단 : 2년간 활동(1기 153명(`15.9~`17.9/ 2기 115명)**

- 구성 : 시군별 5명 이상(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업, 이주민, 시민단체)
- 역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인권시책 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등

□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MOU) : 인권행정 업무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5개 광역기관(2015.10) : 도-도의회-도 교육청-32사단-충남경찰청
- 시군(2016.2)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2016.3)
-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예정)

※ 도 인권위원회 : 서울시와 MOU(2015.3월), 도의원 간담회(2017. 3월),
도의회 인권교육(2017. 10월)

15

인권행정 실행 내용

3-3. 인권교육(공무원 및 도민)

□ **공무원 : 정책 담당자부터 변화!**

- 주요 프로그램 : 행정과 인권, 차별의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영화 상영, 노동, 장애, 평화 등을 주제별 교육

< 도 공무원 교육과정 및 실적(2015~2017) >

과 정 명	계	2015	2016	2017
합 계	5,575	1,215	2,081	2,279
공무원 인권교육(6급이하)	4,433	991	1,676	1,766
간부공무원 인권교육(도, 시군)	852	30	375	447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전문과정)	94	44	30	20
인권시책 담당자 워크숍/ 기타	196	150 (특강)	-	38/8

※ 읍면동장 시책교육(2016.3, 208명)
- 인권침해 사례 토론(다문화 등 7개 분야) → 문제 해결방안 제시

16

인권행정 실행 내용

3-4. 인권문화 확산

□ **인권주간 행사 : 도민인권선언(2014.10.13) 기념**

- 1주년(2015, 도청, 180명) : 기념식 및 인권심포지엄

  * 부대행사 : 인권작품 공모전(표어, 포스터, UCC), 인권도서 전시회

- 2주년(2016, 공주 고마아트센터, 200명) : 기념식, 모둠토론

  * 부대행사 : 나의 인권실천 이야기, 인권작품 전시, 인권도서 전시회

- 3주년(2017, 당진문예의전당, 1000여명) : 기념식(인권토크)

  * 부대행사 : 인권연극, 인권영화제(콘서트), 인권작품 전시 등

□ **추진성과**

- 인권행정 관계기관, 인권단체, 인권활동가 들의 논의의 장
  - 인권 거버넌스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 인권활동가를 넘어 인권과 인권행정에 대한 폭넓은 도민 관심 도출
  - 청소년, 이주민 등 인권 당사자 등 참가, 인권 캠페인 진행

19

인권행정 실행 내용

□ 한국인권회의 : 2016.3.24~3.25, 예산 덕산, 240여명(전국 인권활동가 등)

- 주 제 :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
- 슬로건 : 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지역사회 입니다.

<의 미> 2012년 제1회 한국인권회의(광주) 개최 이후 4년만에 개최
- 전국 인권관계자 간 소통의 장(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 그동안 중앙 및 광역도시 → 지역사회(지방, 중소도시) 주도하는 계기

※ 국내 인권정책의 리더, 역할·책무를 가지는 충남 인권행정 변화의 계기

□ UN인권이사회 패널 토의 참여(도지사) 2017. 9. 4 UN제네바사무소(UNDG)

-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참여한 최초의 인권이사회 행사
- UN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논의가 지방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찰할 수 있는 계기

※ 그동안 인권이사회-중앙정부간의 협력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인권의 실현이 지역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심어줌

21

인권행정 실행 내용

3-5. 인권실태조사 추진

<사업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도내 인권실태의 변화 양상 파악

□ 아동·청소년(2015년) : 1,643명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장애아동, 시설입소

-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운동선수

→ 인권문화 조성(맞춤식 교육), 인권 인프라 구축(교육 및 휴식 시설 확충) 인권 협력체계 구축(참여기회 확대)

□ 이주노동자(2016년) : 393명, 15개국(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 상호 이해 및 소통(언어) 환경 조성, 주거 안전 확보 및 일시보호(쉼터), 산업안전 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22

인권행정 실행 내용

□ 노인(2017) : 도내 65세 이상 노인 / 시군 구분(500명)

→ 인권교육 확대(의식 개선), 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이동권 확보, 취업 확대(빈곤 해소)

[아동·청소년]

[이주노동자]

23

향후 추진과제(방향)

□ 4-1 인권거버넌스(협치)의 고도화 : 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중심

- 4대 영역 : 도(실국), 시군, 시민단체, 유관기관

□ 4-2 인권교육 체계화 : 표준강의안 마련, 인권강사 양성

- 도, 시군, 도 교육청, 충남경찰청과 협력 교육 문화 확산 극대화

□ 4-3 인권기본계획 수립(제2차)

- 각 분야(영역)별 추진성과 분석(토론) 개선점 발굴 전제

□ 4-4 인권주간 문화행사 효율화(효과 극대화)

- 그동안(3년) 추진성과 분석, 발전방안 모색(2018년)

□ 4-5 인권행정 정착화 : 인권영향평가, 실국별 과제 실효성 확보

※ 인권의식 개선 및 문화확대
- (2014) 33.21% → (2015)39.6% → (2016) 42.6%

25

2.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드는 문제의식

– 인권조례, 인권선언으로 도민들은 인권을 가까이 느끼고 있을까?

도민들이 인권의식이 높아졌거나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인권 행정을 추진하는 인권전담 부서는 불과 2년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고려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민들이 인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행정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충남 인권행정을 살펴보면 전담 조직과 인권센터 설치,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주간 행사 등과 인권실태 조사 등이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는 인권 행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대체로 많은 공무원들이 '인권'과 '복지'를 헷갈려하고,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이 추진되려면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인권에 기반한 책무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직급이 높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 행정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자력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힘을 가진 –인권의식과 태도를 갖춘– 시민은,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시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믿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힘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인권교육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주인에게 주인의 대접을 하여 주인답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민(臣民)이 아니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큰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이 추진되는 모든 것에 당사자를 포함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 없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시민의 자력화', '지역 인권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인권 문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아동청소년/이주민/노인 등 해마다 진행

되는 인권실태조사는 '자력화/시민의 인권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민역량의 성장이 곧 지역 인권 역량의 강화입니다. 기획부터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하게 할 것인지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하며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여러 사람이 노력한 실태조사 결과가 인권기본계획 또는 복지계획의 집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캐비넷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의 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인권행정을 견인하고 조력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민인권지킴이단'에게 다양한 교육과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남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충남인권위원회는 조례에 심의·자문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고, 타 광역지자체에 있는 '권고'기능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권행정이 좌우되지 않아야 하고, 행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문 기구'라는 제한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인권위원들이 타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하거나 전국단위 인권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인데도 교통비도 자부담입니다.

3. 제안

□ '인권교육' 점검과 개선

고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교육'의 피로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인권적 환경에서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야 합니다. 도민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양질의 인권 교육에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곧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인권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이 설계되어야 하고, 인권교육 역량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권팀과 인권센터에서 나누어 하고 있는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 도청, 도교육청,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인권교육 관련 전문단체 –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증진시책' 모니터링과 평가

인권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국별 인권증진시책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인권지킴이단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충남인권위원회에서 '인권시책보고'를 통해 대략적인 보고를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협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일거리를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이 근본적으로 인권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권 증진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실국별 칸막이를 트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여를 통해, 참여를 촉진하는 인권문화증진 사업 추진

도민인권선언 기념주간 행사, 도민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며 인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제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활동가와 그룹과의 '집담회' 또는 '워크샵'이 추진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인권을 경험하고 인권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인권교육을 비롯 지역 인권 활동가 및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충남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인권위원회는 행정 안에 만들어졌으나 행정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로서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권고하거나 조언하며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인권 행정 그 자체를 집행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때문에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는데, '인권기구'의 전문성과 책무를 고려한다면 동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해야하는 인권위원회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만 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인권위는 타 광역지자체 인권위가 하고 있는 '권고' 역할이 빠져있고, 인권기구의 하나인 '충남인권센터'는 설치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권기구로서 인권위와 인권센터의 역할과 연계성 확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2017년 한해 충남은 인권행정 보다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인해 소란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상처받는 우리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인권선언은 있으나, 인권보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메 모

메 모

메 모